<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5043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4-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1

[더치디커피]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진심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 .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0, **60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77-940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68-885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77-9403_1(가맹문의)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더치디커피 외 1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0, 6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9.21	2015.10.01	이 주 성	1577-9403	02-568-8852	
	법인등록번호	121111-0295204	사업자등록번호	351-81-0025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 주 성/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더치디커피 더치앤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0, 6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주 성	1577-9403	02-568-8852
관 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등기 임원 (감 사)	이 화 정/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더치디커피 더치앤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0, 6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주 성	1577-9403	02-568-885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주식회사하영에프앤비	진심커피	2023.10.1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제광석
다른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주) 진심코리아 영업표지 진심커피는 2023년 10월 12일 상표권 양수도(하연에프앤비)를 진행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가맹본부 상표권 양수도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더치디커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더치디커피	
상 호	더치디커피 OO점	
서비스표	DUTCH D COFFEE	출원번호 : 40-2024-0207824 (출원일 : 2024년11월13일)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2,126,416	1,535,691	590,724	5,194,535	-66,822	36,220
2023년	1,815,484	1,345,088	470,396	4,494,045	-187,873	-120,328
2024년	1,975,043	1,491,026	484,016	3,834,134	-24,258	13,620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에서 24년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더치디커피 외 1개의 매출액이 포함되었습니다.
* 당사에서 22년, 23년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중 87%가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이며 이중 더치앤빈이 차지하는 비중 , 진심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치앤빈 85% , 진심커피 15% 입니다.

또한,가맹사업관련 매출액에는 원두공급 매출액 외 개설비용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이 주 성	사 내 이 사	2015.09 ~ 현재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사내이사	경영 총괄
	이 주 성	대 표 이 사	2023.10~ 현재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대표이사	경영.사업총괄
	제 광 석	사 내 이 사	2017.03 ~ 2023.10	2023.10 진심코리아 퇴사	사업 총괄
	이 화 정	감 사	2015.09 ~ 현재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감사	감사

*가맹본부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 하였던 제광석民 은 주식회사 진심코리아를 2023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18

* 직전사업연도의 직원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근로소득 A01기준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①	사업내용②
가맹본부	㈜진심 코리아	가맹사업 경영	2014.11. ~ 현재	더치앤빈(등록번호: 20151052)이라는 영업표지의 카페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7. ~ 2023.10.11.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회사에 인도함)**	진심커피(등록번호: 20201084)라는 영업표지의 카페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4.11.01~현재**	더치디커피라는 영업표지의 카페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 표	DUTCH D COFFEE	출원일 : 2024.11.13	출원번호 : 40-2025-0002455호 (출원일 : 2024.11.13)	주식회사 진심코리아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는 상표출원인으로부터 가맹사업기간동안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더치디커피] 가맹사업 현황

1. [더치디커피]를 시작한 날

최초의 가맹점(더치디커피 문래하이테크시티점)을 시작한 날 : 2024년 11월 1일

2. [더치디커피] 연혁

당사 [더치디커피]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진심코리아	더치디커피	이주성	2024.11.01. ~ 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0, 601호

3. 업종

당사의 업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 종	
더치디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더치디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1	-
서울	-	-	-	-	-	-	-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더치디커피]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더치디커피]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1	0	0	0	1

6. [더치디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②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진심 코리아	더치앤빈	20151052	카페	104/-	87/-	67/-
		진심커피	20201084	카페	16/-	*진심커피 양수도	*진심커피 양수도

* (주) 진심코리아 진심커피는 **2023년 10월 12일** 상표권 양수도(하연에프앤비) 진행 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가맹본부 상표권 양수도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지 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가맹점 매출액	면적 3.3㎡ 당	상 한	면적 3.3㎡ 당	하 한	면적 3.3㎡ 당	
전체	1	해당없음	-	-	-	-	-	
서울	1	-	-	-	-	-	-	
부산	0	-	-	-	-	-	-	
대구	0	-	-	-	-	-	-	
인천	0	-	-	-	-	-	-	
광주	0	-	-	-	-	-	-	
대전	0	-	-	-	-	-	-	
울산	0	-	-	-	-	-	-	
세종	0	-	-	-	-	-	-	
경기	0	-	-	-	-	-	-	
강원	0	-	-	-	-	-	-	
충북	0	-	-	-	-	-	-	
충남	0	-	-	-	-	-	-	
전북	0	-	-	-	-	-	-	
전남	0	-	-	-	-	-	-	
경북	0	-	-	-	-	-	-	
경남	0	-	-	-	-	-	-	
제주	0	-	-	-	-	-	-	

당사의 2024년 가맹점은 1개로 전체 가맹점매출액 기재 시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더치디커피 가맹본부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더치디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더치디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	61일

9. [더치디커피]의 가맹지역본부(지사,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가. 더치디커피

(단위 : 천원)

당사의 2024년 광고·판촉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 판촉비		123,883	123,883	-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전액부담
광고	소계		(비공개)	(비공개)	-	
판촉	소계		(비공개)	(비공개)	-	

* 직전사업연도(2024.12.31.)의 광고 판촉관련 지출비용의 부담은 가맹본부가 100% 부담하였습니다.
* 광고 및 판매촉진관련 상세 사항은 2024**년도 1월1일 부터 2024년12월31일** 까지의 당사 계정별 원장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상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더치디커피]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가맹금예치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진심코리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1)개월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더치디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타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미반환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계약서 제12조 1항 참조	개점 후	개점 후 해당 가맹비는 소멸되므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후	교육진행 시 반환되지 않음
총계	**6,600**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미반환 사유	비고
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등	가맹점 계약해지시 반환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가맹비	3,3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합 계	8,6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기타 지급 필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기본공사	협력업체 외 1개사	16,000	2,000	공사 시작 전 최종견적서상 총비용의 40% 입금	공사 전 계약취소	26.4m² 기준 3.3m² 당 2,000
간판 및 외부사인	협력업체 외 1개사	5,000	625			
의탁자	㈜진심코리아	1,750	219	공사착공 15일 후 총비용의 50% 입금	협력업체 주문 전	매장크기별 상이
VMD	㈜진심코리아	1,600	200			
주방설비	㈜진심코리아	23,000	2,875	공사 완료시 최종 잔금 10% 입금	공사 전 계약취소	매장크기별 상이
초도물품	㈜진심코리아	5,000	625			
총계		**52,350**	**6,544**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더치디커피 사업본부 (1577-9403)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200	익월 15일	-	-	-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광고 진행 1달전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후	사전 협의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판촉 진행 1달전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후 진행	교육 실시 10일전	교육 미실시	교육 실시후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실비	주문 전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후 진행	교체·보수	-	-	교체·보수 필요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연체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금액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단위 : 천원,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산정산출의 계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당사의 가맹점의 운영기간은 2개월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1577-9403)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 연장(갱신 및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더치디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 진심코리아]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더치디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4.12.3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더치디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더치디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가 지정하는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좌측에 기재된 품목을 제외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 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동의 없이 공급받은 상품, 자재를 제 3자에게 재판매,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별지 참조	초기 오픈시 확정 가격 변경시 및 신메뉴 출시의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항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당사 및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 사업	더치디커피, 더치앤빈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배정된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보아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은 가맹계약 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점포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에 따른 특별영업지역으로 적용되며, 일반 영업지역의 범위에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특별엉엽지역의 범위는 가맹계약서상 별첨내역에 기재된 지도로써 표기하며, 가맹본부는 해당 특별영업지역의 상세한 내역과 범위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더치디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련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더치디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선 택 지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7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1항
○ [더치디커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7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0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즉시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0조 2항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0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0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577-9403)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 수료
대리 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 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더치디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가 제공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판매를 하는 영업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577-9403)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의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1주 6일 이상	문의 (1577-94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최소 종업원 수 및 종업원의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의 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대리운영자를 위임하여 대체할 수 있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더치디커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진행 및 분담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전액부담	없음	없음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행사	기타개별행사 [지역광고]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치디커피]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

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단위: 원, 부가세 별도)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합계		45일 내외	[14p~15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1577-9403)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가맹점10개 리스트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계약서 제공	- 계약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선정	- 선정된 점포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의 동의 및 결정	D-33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2~29	
가맹계약 체결	-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예치금 예치 - 본사 직접 예치(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	D-27	
인테리어 공사	- 점포실측 및 설계 -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시공	D-27~25 (평균 20일)	
주방기기입고	- 공사 완료 후 입고	D-3	
Pre-Open	- 초도물품 입고 후 시범운영	D-1~2	
Grand-Open	- 오픈 및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	D-day	
점포 관리	- 지속적인 슈퍼바이저가 담당배정 - 지속적인 컨설팅	지속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비용 확정 및 결재, 점포의 평수, 업체의 상황, 잔금의 지불 등에 따른 실무 진행 과정에서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요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시의 분담 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점포환경 개선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비용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새롭게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더치디커피]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오픈판촉 지원	오픈가맹점 초기 원두 지원	가맹점 오픈시	1회성	매장별 원두 10Kg	
홍보물지원	가맹점 홍보물 무상 지원 (포스터, POP, 네임텍 등)	더치디커피 전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홍보물 제공	
배달서비스	배달 매출 신장 활성화를	3개월 연속 배달앱 광고	1회성	매장별	

활성화지원	위한 배달앱 신규 가입 가맹점 원두 10kg 지원	진행 가맹점의 경우		원두 10Kg	
테이크아웃 매출활성화 지원	테이크아웃시 아메리카노 할인 판매 가맹점	아메리카노 2,000원이하 판매 가맹점의 경우	6개월간	매월 원두 사용량의 20% 추가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프로그램

당사는 더치디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본부 소개, 조리 및 홍보/판촉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개점 후 교육프로그램

당사는 더치디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점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수시교육	신 메뉴 조리법 및 점포관리 등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 협의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 교육
재교육	교육수준 부진가맹점에 대한 가맹점관리 및 교육	개별교육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귀하가 [더치디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전 교육	5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77-94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dutchandbean.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더치디커피]의 최근 3년 사업년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 [더치디커피]의 최근 3년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 [더치디커피]의 필수공급 상품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 [더치디커피]의 메뉴 및 가격 일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5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확인서

※ 본 수령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더치앤빈 점포개발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확인서

본인은 더치앤빈 가맹계약 진행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 2017.03.21,제14454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3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가맹계약 당사자에 대한 사항

성 명		영업표지 (브랜드명)	더치앤빈
생년월일 (법인설립일)		연락처(휴대전화)	
수령인의 주소(법인주소지)			
가맹희망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본 서류를 제공받은 장소 및 방법			

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및 수령확인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에 따른 내용 및 수령 확인 항목

1. 수령한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맹점 개설을 위해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수령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다름이 없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는 가맹번호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는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상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사실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 공 일 자	년 월 일
위 확인자 (가맹희망자)	인(또는 서명)
더치앤빈 가맹본부	㈜진심코리아 대표이사 이주성 인(또는 서명)

3.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및 수령확인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에 따른 내용 및 수령 확인 항목

1.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미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체결할 가맹계약서를 기 수령하였는바, 가맹계약서 내의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합니다.

이상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사실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공 일 자	년 월 일
위 확인자 (가맹희망자)	인(또는 서명)
더치앤빈 가맹본부	㈜진심코리아 대표이사 이주성 인(또는 서명)

DUTCH & BEAN

별첨.6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및 사전제공 수령확인서

※ 본 수령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더치앤빈 점포개발팀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및 사전제공 수령확인서

본인은 더치앤빈 가맹계약 진행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 2017.03.21,제14454호]에 따라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가맹계약 당사자에 대한 사항

성 명		영업표지 (브랜드명)	더치앤빈
생년월일 (법인설립일)		연락처(휴대전화)	
수령인의 주소(법인주소지)			
가맹희망자의 장래점포 예정지			
본 서류를 제공받은 장소 및 방법			

2. 인근10개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단체에 영업중인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순서 (거리순)	상호 (지점명)	인근 가맹점 소재지	연락처 (매장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이상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가 사실이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였음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을 사전에 수령하였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제 공 일 자	년 월 일
위 확인자 (가맹희망자)	인(또는 서명)
더치앤빈 가맹본부	㈜진심코리아 대표이사 이주성 인(또는 서명)

DUTCH & BEAN

MEMO